

의안번호	제 939 호
의결 연월일	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안자	의회운영위원장
제안연월일	2021년 12월 15일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939
----------	-----

제안연월일 : 2021년 12월 15일
제안자 : 의회운영위원장

1. 제안사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1.13.시행),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22.1.13.시행) 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규칙에 위임한 사항 반영
- 인용 조문 정비 및 자구 정정, 회의 운영에 따른 제도개선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의안 발의 삭제(안 제11조제1항)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1.13.시행)으로 현행법 제66조제1항에 명시된 의원의 의안 발의 정족수를 지방의회의 조례로 정하도록 해 이를 삭제하고 기본조례로 명시
- 조례안 예고 대상 및 소관부서 명확화 (안 제14조제1항, 제3항)
- 기록표결 도입 및 무기명투표 표결 방법 개정 (안 제39조)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1.13.시행)으로 '이의유무'를 물어 이의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록표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의록에 작성
 - 무기명 투표 대상 안건 규정으로 의장 제의 또는 의원 동의에 의한 무기명 투표 표결 삭제. 무기명투표 대상 안건 정비
- 수정안을 표결함에 있어 여러 개의 수정안 및 위원회 수정안 부결시 원안에 대한 해석을 명확화하기 위해 단서 신설 (안 제41조제2항)
- 회의록 자구의 정정 요청 시기 현실화 (안 제45조제1항)
 - 7일 이내 또는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날 오후 5시까지 → 7일 이내에

- 회의록 배부 및 공개 개정 (안 제46조제1항)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1.13.시행)으로 회의록의 공개 대상(일반→주민) 및 회의록 비공개 관련 조문 개정
- 의장의 위원회 출석 및 발언 신설 (안 제53조의2)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1.13.시행)으로 현행법 제50조와 같이 의장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신설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의 이의신청 심사, 수리 및 각하 등 절차 신설(안 제57조, 제57조의2)
 -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이의신청 심사, 수리 및 각하 심의 등 기능 수행
- 예산안 심사의 기본원칙 정비 (안 제64조)
 -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도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
- 의원의 징계대상 행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는 근거 삭제 (안 제73조제5항)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1.13.시행)으로 현행법 제87조 본회의에 바로 회부할 수 있는 근거 삭제
-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및 의견수렴 확행 (안 제78조 내지 제83조)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1.13.시행)으로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 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의원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 등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의무화
 - 윤리특별위원회는 안건 심사 전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견 수렴 확행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및 자구 정정 등
(안 제1조, 제5조, 제8조, 제9조, 제11조제2항 및 제4항~제6항, 제12조, 제14조제2항, 제43조제11호, 제51조, 제53조, 제57조의3, 제60조, 제66조, 제70조, 제71조, 제72조, 제73조제1항 및 제3항, 제74조)

3. 규칙안전문 : 불 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불 임

5. 관계법령 발취 : 불 임

6.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71조 및 충청북도의회 기본조례 제57조”를 “「지방자치법」 제83조 및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57조”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의장이나”를 “의장 또는”으로, “제63조제1항”을 “제72조제1항”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전단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배부한다”를 “통지한다”로 한다.

제9조 전단 중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삭제”를 “안건 추가·삭제 및 순서를 변경”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의안의 제출과 발의)”를 “(의안의 제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을 “법 제76조제1항”으로, “의회에”를 “의장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조치를 수반하는”을 “조치가 필요한”으로, “수반될”을 “필요할”로, “이에 상응하는”을 “그에 따른”으로 한다.

제11조제5항 본문 중 “제1항”을 “법 제76조제1항”으로,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경우에는 발의 의원과 찬성 의원”으로, “발의의원의”를 “발의 의원의”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발의의원이”를 “발의 의원이”로, “대표발의 의원”을 “대표발의 의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공표 또는”을 “공표 하거나”로 한다.

제12조제2항제7호 중 “선임”을 “선출”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위원회에서 심사할”을 “의장은 위원회에 회부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충청북도”를 “충청북도나 충청북도교육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직무소관 상임위원회 소속이 아닌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할 때에도 조례안 예고 절차는 제1항과 제2항을 따른다.

제39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의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기록표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39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제3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법 제7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표용지 또는 전자투표에 의한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1. 법 제57조에 따른 의장·부의장 선거
2. 법 제60조에 따른 임시의장 선출
3. 법 제62조에 따른 의장·부의장 불신임 의결
4. 법 제92조에 따른 자격상실의결
5. 법 제100조에 따른 징계 의결
6. 법 제32조, 법 제120조 또는 법 제121조, 법 제192조에 따른 재의요구에 관한 의결
7. 그 밖에 의회에서 하는 각종 선거 및 인사에 관한 사항

제41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위원회의 수정안이 부결된 경우에는 이를 원안으로 간주하여 당초의 원안을 표결하지 아니한다.

제43조제1항제11호 중 “기명투표의 투표자 성명”을 “표결의 투표자”로 한다.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이내 또는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날 오후 5시까지”를 “이내에”로 한다.

제4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일반”을 “주민”으로 한다.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51조제1항 본문 중 “하고”를 “듣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조치를 수반하는”을 “조치가 필요한”으로 한다.

제53조의 제목 “(다른위원회 의원의 발언 청취)”를 “(다른 위원회 의원의 발언 청취)”로 한다.

제5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2(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57조를 제57조의3으로 하고, 같은 조(중전의 제57조) 제1항 중 “법 제15조의 2제2항”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법 제15조의2”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로 하고, 제57조 및 제57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② 회기가 아닌 기간에 이의신청 심사를 위한 소관 상임위원회 소집은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제12조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 회부하지 아니 하며, 그 외의 사항은 본 규칙을 따른다.

제57조의2(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할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심의를 위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소집 및 결정 절차는 제5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0조제1항제3호 중 “출석의원”을 “출석위원”으로 한다.

제64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예결위원회 심사기간 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예결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66조제1항 중 “부분별”을 “부문별”로 한다.

제70조제1항 중 “법 제79조제1항”을 “법 제91조제1항”으로, 같은 항 및 제2항 중 “피심의원”을 각각 “심사 대상인 의원”으로 한다.

제71조제1항 및 제4항 중 “피심의원”을 각각 “심사 대상인 의원”으로 한다.

제7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피심의원”을 각각 “심사 대상인 의원”으로 한다.

제6장의 제목 “방 청”을 “징 계”로 한다.

제7장(제78조부터 제83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등

제78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 의회는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의원의 자격심사, 윤리심사,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 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9조(자문위원회 구성) ①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학계·법조계·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 관련 분야에서 공정성·전문성을 갖춘 사람 으로 의장이 위촉한다. 다만 정당의 당원은 위원이 되지 못한다.

③ 자문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자문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0조(자문위원회 임기) ①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 부터 4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중도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 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②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1조(자문위원회 운영) ① 자문위원회는 의장,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2조(자문위원회 위원 제척·회피) ① 자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진술·자문·연구·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그 밖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위원 자신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 회의를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83조(의견수렴)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자격심사, 윤리심사,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84조 앞에 “제8장 방 청”을 삽입한다.

제84조를 제90조로 하고, 제73조부터 제78조까지를 각각 제84조부터 제89조까지로 한다.

제79조 앞에 “제7장 징 계”를 삭제한다.

제79조부터 제83조까지를 각각 제6장제73조부터 제77조까지로 한다.

제73조(중전의 제79조)제1항 중 “법 제86조”를 “법 제98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법 제83조제2항”을 “법 제95조제2항”으로, “청구서”를 “요구서”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74조(중전의 제80조) 제1항 전단 중 “제79조제1항”을 “제7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79조제2항”을 “제73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79조제1항”을 “제73조제1항”으로 한다.

제77조(중전의 제83조)제4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71조 및 충청북도의회 기본조례 제57조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충청북도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83조 및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57조----- ----- ----- ----- ----- ----- -----.</p>
<p>제5조(회의에 관한 선포) ① (생략)</p> <p>② <u>의장이나</u> 위원장은 제4조에 따른 개의 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하면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p> <p>③ (생략)</p>	<p>제5조(회의에 관한 선포)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의장 또는</u> ----- ----- ----- 제72조제1항----- ----- -----.</p> <p>③ (현행과 같음)</p>
<p>제8조(의사일정의 작성) ①·② (생략)</p> <p>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의사일정을 미리 위원에게 배부한다. 그러나 재개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p> <p>④ (생략)</p>	<p>제8조(의사일정의 작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제1항 및 제2항----- ----- 통지 한다. ----- -----.</p> <p>④ (현행과 같음)</p>
<p>제9조(의사일정의 변경) 재적의원</p>	<p>제9조(의사일정의 변경) -----</p>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하거나 제출하는 경우에 의원과 위원회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를, 도지사와 교육감은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위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⑥ 의원이 발의한 제정조례안 또는 전부개정조례안 중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공표 또는 홍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안의 부제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제12조(상임위원회 회부)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의안은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에 부칠 수 있다.

1. ~ 6. (생략)

필요한 -----

----- 필

요할 -----

----- 그에

따른 -----

⑤ 법 제76조제1항-----

----- 경우에는 발의 의원

과 찬성 의원-----

----- 발의 의원

의 -----.

-- 발의 의원이 -----

---- 대표발의 의원 -----

⑥ -----

----- 공표하거나

제12조(상임위원회 회부) ① (현

행과 같음)

② -----

1. ~ 6. (현행과 같음)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8. ~ 14. (생략)

③ ~ ⑥ (생략)

제14조(조례안 예고) ① 위원회에서

심사할 조례안 중 필요한 경우, 그 입법 취지나 주요내용, 전문 등을 예고(이하 “조례안예고”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례안예고를 할 때에는 관련 조례를 심사하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재정부담 수반, 규제강화 여부 등에 대한 충청북도 관련부서의 의견과 조례안예고문을 작성하여 미리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③ ~ ⑥ (생략)

제39조(표결방법) ① (생략)

②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무기명 전자투표 또는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 투표로 표결

7. ----- 선출-----

8. ~ 14.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4조(조례안 예고) ① 의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

-----.

② -----

-- 충청북도나 충청북도교육청

-----.

③ 직무소관 상임위원회 소속이 아닌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할 때에도 조례안예고 절차는 제1항과 제2항을 따른다.

④ ~ ⑦ (현행 제3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

제39조(표결방법) ① (현행과 같음)

<삭제>

한다.

③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을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④ 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 의원 자격 심사, 징계, 인사와 관련된 안건, 재의 요구의 건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 투표로 실시한다.

제41조(수정안의 표결순서) ①

③ -----

--. 이 경우, 기록표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단,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④ 법 제7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표용지 또는 전자투표에 의한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1. 법 제57조에 따른 의장·부 의장 선거

2. 법 제60조에 따른 임시의장 선출

3. 법 제62조에 따른 의장·부 의장 불신임 의결

4. 법 제92조에 따른 자격상실 의결

5. 법 제100조에 따른 징계 의결

6. 법 제32조, 법 제120조 또는 법 제121조, 법 제192조에 따른 재의요구에 관한 의결

7. 그 밖에 의회에서 하는 각종 선거 및 인사에 관한 사항

제41조(수정안의 표결순서) ①

② (생략)

제46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공개한다. 다만, 의장은 비밀이 요구되거나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는 발언자나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배부하거나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⑤ 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 중 전자회의록은 일반에게 배포할 수 있다.

제51조(위원회의 심사) ① 위원회

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하고, 질의·토론·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창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도지사 또는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46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
----- 주민-----
-----.

제51조(위원회의 심사) ① -----

----- 듣고-----

-----.

② -----
----- 조치가 필요한 -----

-----.

③ (생략)

제53조(다른위원회 의원의 발언
청취) ①·② (생략)

<신설>

<신설>

<신설>

③ (현행과 같음)

제53조(다른위원회 의원의 발언
청취) ①·② (현행과 같음)

제53조의2(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
여 발언할 수 있다.

제57조(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
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② 회기가 아닌 기간에 이의신청
심사를 위한 소관 상임위원회
소집은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
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제1
2조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 회
부하지 아니하며, 그 외의 사항
은 본 규칙을 따른다.

제57조의2(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주
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각하

제57조(주민 청구조례안의 심사)

① 위원장은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주민 청구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대표자나 대표자가 지정한 대리인(이하 “청구인의 대표자 등”이라 한다)을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 취지(청구인의 대표자 등과의 질의·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

② ~ ④ (생략)

⑤ 법 제15조의2에 따른 주민 청구조례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 절차는 제51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안자는 청구인의 대표자 등으로 본다.

제60조(위원회 회의록) ① 위원회

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2. (생략)

3. 출석위원의 성명

할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심의를 위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소집 및 결정절차는 제5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7조의3(주민 청구조례안의 심사) ①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

-----.

제60조(위원회 회의록) ① ----

-----.

1. 2. (현행과 같음)

3. 출석위원-----

4. ~ 11. (생략)

② (생략)

제64조(예산안 심사의 기본원칙)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삭감예산 증액 시 협의해야 한다.

제66조(예산안의 의결) ① 예산안의 심사보고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각 부분별로 회의에 부칠 수 있다.

② (생략)

제70조(자격심사 청구서의 회부와 답변) ① 의장은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분을 피심의원에게 답변기일을 정하여 송달하여야 한다.

② 피심의원이 천재지변이나 질병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답변

4. ~ 11.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64조(예산안 심사의 기본원칙)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예결위원회 심사기간 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예결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66조(예산안의 의결) ① -----

----- 부분별-----
-----.

② (현행과 같음)

제70조(자격심사 청구서의 회부와 답변) ① ----- 법 제91조제1항-----

----- 심사 대상인 의원-----
-----.

② 심사 대상인 의원-----

기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때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1조(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 등) ① 의장은 피심의원으로부터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③ (생략)

④ 본회의에서 의원에 대한 자격상실의 의결을 한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에게 송부한다.

제72조(심문과 발언)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의장을 거쳐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이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심의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③ 피심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제6장 방 청

-----.

제71조(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 등) ① ---- 심사 대상인 의원-----
-----.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 심사 대상인 의원-----.

제72조(심문과 발언) ① -----

----- 심사 대상인 의원-----.

② ----- 심사 대상인 의원-----

----- 심사 대상인 의원-----.

③ 심사 대상인 의원-----

-----.

제6장 징 계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7장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등
제78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설
치) 의회는 의원의 겸직 및 영
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
과 의원의 자격심사, 윤리심사,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윤리심사자문위원
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제79조(자문위원회 구성) ① 자문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및 부
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
내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학계·법조계·언론
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
천하는 사람 중 윤리강령 및 윤
리실천규범 등 관련 분야에서
공정성·전문성을 갖춘 사람으
로 의장이 위촉한다. 다만 정당
의 당원은 위원이 되지 못한다.
③ 자문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
장은 자문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사고가 있
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
를 대행한다.

제80조(자문위원회 임기) ① 자문

<신 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4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중도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② 위원이 꺾워된 때에는 의장은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1조(자문위원회 운영) ① 자문위원회는 의장,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신 설>

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2조(자문위원회 위원 제척·회피)

① 자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진술·자문·연구·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그 밖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위원 자신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 회의를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신 설>

제83조(의견수렴) 윤리특별위원회

⑤ 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징계
대상 행위가 지극히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본회의
에 바로 부칠 수 있다.

제80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① 제79조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징계회부는 의
장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
계 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같은 조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
는 날부터 폐회나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하여야 한
다. 같은 조 제5항의 본회의에
부치는 시한 또한 같다.

② 제79조제2항에 따른 위원장
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징계요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
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5
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 중에 징계 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차기 의회의 집회
일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제79조제

<삭 제>

제74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① 제73조제1항

--. <후단 삭제>

② 제73조제2항-----

③ ----- 제73조제1

1항에서 제4항에 따라 징계가 회부된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심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 기간 내에 심사를 종료할 수 없을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의 결을 얻어 3월의 범위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1조 · 제82조 (생략)

제83조(징계의 의결과 선포) ① ~ ③ (생략)

④ 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의 전문성과 징계 양형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84조 (생략)

항-----

-----.

제75조 · 제76조 (현행 제81조 및 제82조와 같음)

제77조(징계의 의결과 선포) ① ~ ③ (현행과 같음)

<삭제>

제90조 (현행 제84조와 같음)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시행 '22.1.13.)】

제65조(윤리특별위원회) 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별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지방의회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66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①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장의 자문과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민간전문가 중에서 지방의회의 의장이 위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72조(의사정족수) ①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제74조(표결방법)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에는 조례 또는 회의규칙으로 정하는 표결방식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可否)를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1. 제57조에 따른 의장·부의장 선거

2. 제60조에 따른 임시의장 선출
3. 제62조에 따른 의장·부의장 불신임 의결
4. 제92조에 따른 자격상실 의결
5. 제100조에 따른 징계 의결
6. 제32조, 제120조 또는 제121조, 제192조에 따른 재의 요구에 관한 의결
7. 그 밖에 지방의회에서 하는 각종 선거 및 인사에 관한 사항

제76조(의안의 발의) ①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지방의회의원의 찬성으로 발의한다.

⑤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한 제정조례안 또는 전부개정조례안 중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공표하거나 홍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안의 부제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제78조(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필요한 의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그에 따른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83조(회의규칙) 지방의회는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84조(회의록) ④ 지방회회의 의장은 회의록을 지방의회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지방회회의 의장이 인정하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91조(의원의 자격심사) ① 지방의회의원은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지방회회의 의장에게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심사 대상인 지방의회의원은 자기의 자격심사에 관한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92조(자격상실 의결) ① 제91조제1항의 심사 대상인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자격상실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 심사 대상인 지방의회의원은 제1항에 따라 자격상실이 확정될 때까지는 그 직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95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① 지방의회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하여 발언해서는 아니 된다.

제98조(징계의 사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이 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제99조(징계의 요구)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98조에 따른 징계대상 지방의회의원이 있어 징계 요구를 받으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제95조제1항을 위반한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모욕을 당한 지방의회의원이 징계를 요구하려면 징계사유를 적은 요구서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의 징계 요구를 받으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시행 '22.1.13.)】

제11조(이의신청 등)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청구인명부의 서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서명을 무효로 결정하고 청구인명부를 수정한 후 그 사실을 즉시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청구권자가 아닌 사람의 서명
- 2.누구의 서명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서명
- 3.제7조제1항에 따른 서명요청권이 없는 사람이 받은 서명
- 4.한 사람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유효한 서명을 한 경우 그 중 하나의 서명을 제외한 나머지 서명
- 5.제8조제1항에 따른 서명요청 기간 외의 기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서명요청 제한 기간에 받은 서명
- 6.제9조제2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서명 취소를 요청한 서명
- 7.강요·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서명

②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청구인명부를 수정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을 한 사람과 대표자에게 알려야 하며,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즉시 이의신청을 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결정으로 청구인명부에 서명한 청구권자의 수가 제5조제1항에 따른 청구요건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대표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 내에 보정하게 할 수 있다.

1. 시·도: 15일 이상

2. 시·군 및 자치구: 10일 이상

⑤ 제4항에 따라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제출, 공표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10조 및 이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조제1항 본문 중 “제8조제1항에 따른 서명요청 기간”은 “제11조제4항에 따른 보정 기간”으로 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4조, 제5조 및 제10조제1항(제1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고,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제11조제2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2.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결정이 끝난 경우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 제13조(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절차)** ① 지방의회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이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지방의회는 심사 안건으로 부쳐진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의 취지(대표자와의 질의·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법」 제79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주민청구조례안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수리한 당시의 지방의회위원의 임기가 끝나더라도 다음 지방의회위원의 임기까지는 의결되지 못한 것 때문에 폐기되지 아니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충청북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제정예정)】

제10조(이의신청)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정에 대한 절차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으로 정한다.